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41 발의연월일: 2024. 10. 10.

발 의 자:차규근・김준형・황운하

정춘생 • 신장식 • 박은정

김선민 · 김재원 · 조 국

이해민 · 강경숙 · 서왕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국가 총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구조적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12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1곳 등 전국 89개 시군구에 달함.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을 배울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현실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

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종합평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와 면접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국적법령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는 현재도 종합평가와면접심사를 면제함으로써 귀화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있음. 이에 비하여 결혼이민자는 현재 종합평가만 면제받고 있음.

이에 극심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민의 배우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외에 면접심사도면제하는 간소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보다 원활한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에 기여하려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가 신청자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 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다)를 실 시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 중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
- 2.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귀화허가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 한 사람
-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귀화허가 신청 당시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이들의 원활한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하고 심사 중인 자는 이 법 개정규정에 의한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
	한 종합평가 등) ① 법무부장
	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
	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
	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
	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
	<u>다)를 실시한다.</u>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와 면접심
	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

- 2.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귀화허가 신청 당시 15세 미 만인 사람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 람
-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사람
- 3. 귀화허가 신청 당시 15세 이 상 19세 미만인 사람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 람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 귀화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이들의 원활한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